
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간사)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3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물류정책분과위원회: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 · 조정,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 · 지원,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 2. 물류시설분과위원회: 물류의 공동화 · 표준화 · 정보화 및 자동화, 물류시설 · 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
 3. 국제물류분과위원회: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,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,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,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(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해양수산부장관(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)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2. 11. 30., 2015. 12. 22.>
1.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· 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 2.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. 다만,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,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제13조의2(전문위원회)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 · 연구 · 검토한다.

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- 나.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- 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 · 연구 · 검토를 요청한 사항
 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·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- 나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다. 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
 - 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 · 연구 · 검토를 요청한 사항
-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)의 위원